

## (韓國/主題) 韓國의 電子稅金計算書 發行制度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12월 22일 법률 2934호로 제정되었고, 이듬해인 1977년 7월 1일부로 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대단히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며 영수증 및 청구서의 기능 외 장부로서의 기능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자신고는 2000년도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실무적인 보완을 거쳐 2002년도 부가가치세신고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전자신고가 완전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기존의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관련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우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가 사라지고 전자세금계산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기장을 중심으로 하는 세무대리시장에 대변혁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 부가가치세 개요

#### 1. 부가가치세의 개념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하며,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이다.

#### 2. 부가가치세의 유형

##### (1) 국민 총생산형(GNP type) 부가가치세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 즉 총투자비용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총 매출액에서 중간재 구입액을 공제하고 자본재의 매입비용이나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각 단계에서의 임금, 이자, 이윤, 지대, 감가상각비의 합계액인 국민총생산액과 일치한다.

(2) 소득형(NNP type) 부가가치세

총투자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순 투자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임금, 이자, 이윤, 지대의 합계액인 국민순생산액과 일치한다.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소비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기업의 총매출액에서 원재료 및 중간재 구입액과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3.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가산법 : 부가가치의 분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일정기간 중 발생한 각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 이자, 이윤, 지대 등의 합계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2) 공제법 : 부가가치의 생산측면에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전단계 거래액 공제법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기업의 부가가치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2) 전단계 세액공제법

일정기간 중 각 기업의 매출액 전체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 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

###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 긍정적 효과

- 1) 수출촉진 및 국제수지 개선
- 2) 투자유인
- 3) 조세의 중립성 유지로 자원배분의 합리화
- 4) 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 5) 조세제도의 간소화

(2) 부정적 효과

- 1) 물가 등귀의 촉진작용
- 2) 조세부담의 역진성
- 3) 경기조절기능의 미흡
- 4)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업무상 비용의 증대

5. 세금계산서의 기능

(1) 본원적 기능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요약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음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전가를 위한 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한다.

(2) 파생적 기능

- 1)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 송장(invoce)의 역할, 외상거래에 있어서 청구서의 역할, 현금거래에 있어서 대금영수증의 역할도 수행한다.
- 2) 기장에 있어서 기초적인 증빙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국세청장이 지정한 영세사업자가 교부 받았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3) 세금계산서는 과세행정상으로도 매우 주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통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됨은 물론이고,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된다.

## 6. 한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소비형 부가가치세로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 방법에서 부가가치세로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매출금액                                    10,000,000 원 (부가가치세 10% = 1,000,000 원 별도)
- ②원재료·상품 등 매입금액    3,000,000 원 (부가가치세 10% = 300,000 원 별도)
- ③종업원 급여,지급                    5,000,000 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700,000 원(①의 1,000,000 - ③의 300,000)이 된다.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

### 1. 전자세금계산서 개요

세법상 공인된 디지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기존 종이계산서와의 차이점은 발행되는 형태의 차이이며,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되므로 별도의 출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하드디스크 내에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 출력에 따른 비용이나 공간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신고에 있어서 매월 세금계산서가 자동으로 합산, 처리되어 신고기간 세무사사무소의 분주함은 없어지게 된다.

### 2.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이 2008 년 하반기부터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함께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 개발지침」을 완성하였으며, ASP 사업자 등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이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마크를 부여 하며,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 3. 시행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은 2001 년 1 월 29 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3 조 6 항의 규정을 신설하고, 세금계산서를 전자적으로 교부하여 보관하는 방법(국세청 고시 2001-4 호)을 고시하면서 도입하게 되었으며,

- (1)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0 년 1 월 1 일부터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 (2)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경과를 지켜본 뒤 추후 시행할 예정이다.

###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세(注)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과세사업자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는 제외하고 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1)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많은 대용량 연계대상 사업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교부 중계사이트 (ASP 사업자)에 가입하여 발행하는 방법

### (2) 영세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발행시스템 또는 한국세무사회가 설립한 전산법인을 이용하는 방법

### (3) 인터넷 취약계층의 경우

전화기를 통한 ARS 발행 또는 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한 VAN 단말기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신용카드 결제 망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경우가 해당된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법인사업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  
(注)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다.

농·축·수·임산물, 수도물,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여객운송용역, 도서·신문·잡지, 우표·인자·증지, 담배, 금융·보험용역,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 인적 용역,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등, 도서관등의 입장, 종교자선 등 공익단체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기타 부수면세

## 6.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절차

발급절차는 다음 순서와 같다

- ①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를 신청한다.(공급자)
  - 공인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증권전산원,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증명,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 등
- ②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 인증서 발급비용(세금계산서 전용)  
법인:4,400 원(개인 2,200 원), 범용:110,000 원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규모(2007 년)는 전체 5.6 억 건의 15%수준인 8 천만 건으로 추정 됩니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송신한다(인터넷 전산시스템)
  - 사업자 자체 구축
  - 발급대행업체 보유
  - 국세청 전산 시스템
- ④ 수신 및 승인(공급 받는 자)

ERP 시스템 구축자 및 ASP(중계 사업자), 국세청 전산 시스템별 교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전자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을 받은 ERP 등 시스템 구축자 또는 세금계산서 중계 사업자(ASP) 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 1) 매출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자)는 전자서명 후 거래정보를 ERP 또는 ASP 에 입력
  - 2) 매입자는 수취내역을 확인하고 ERP 또는 ASP 사업자에게 승인 통보
  - 3) ERP 또는 ASP 사업자는 전자서명 된 거래정보를 국세청 세금계산서관리시스템에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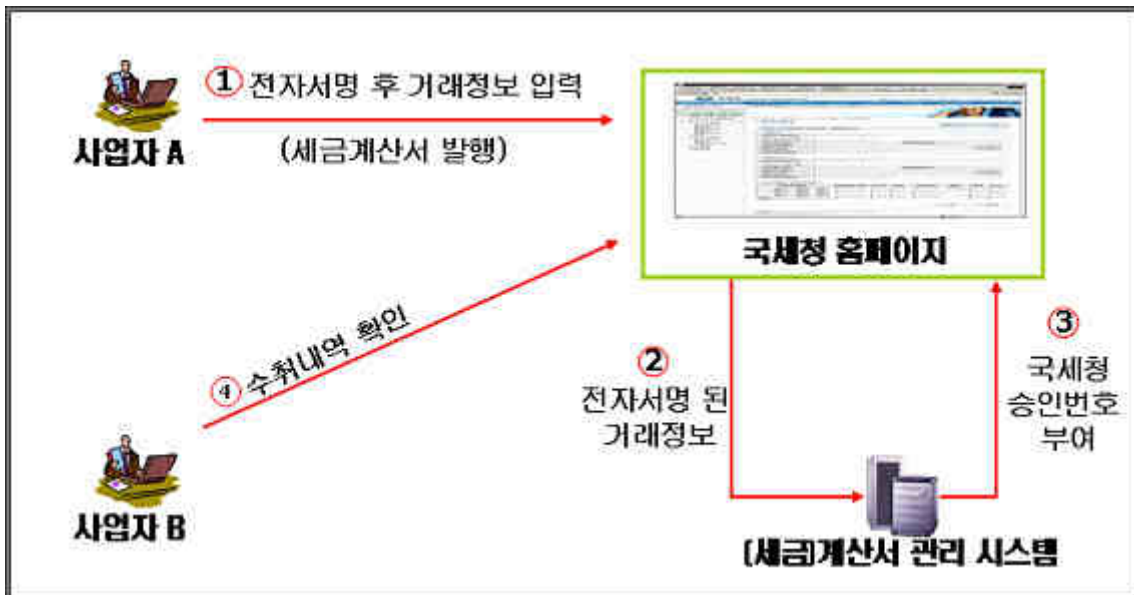
(교부절차 도해)



(2) 국세청 시스템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소규모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적은 소규모의 법인사업자는 ERP 또는 ASP 를 이용하지 않고 실시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절차 도해)





## 7.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또는 발행일의 다음달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을 말함)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를 면제한다.

## 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위한 사업자 준비사항

법인사업자는 2010 년 1 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 등은 법인 사업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교부 받아야만 한다.

### (1) 법인사업자 (37 만 사)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ERP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SP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발행 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도 사전에 발급 받아야만 한다.

반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mail 계정이 필요하고, 본인이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도 가입하여야만 한다.

### (2) 개인사업자 (400 만 명)

법인이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를 위한 E-mail 계정이 있어야만 하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를 위하여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준비하여야 한다.

### (3) 공인인증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인인증서로는 기존의 범용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에서 준비 중인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E-Mail 계정

가급적 대응량이며, 전자세금계산서만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만드는 것이 좋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대다수가 포털사이트의 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가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네이버, 다음 등과 전자세금계산서를 중요정보로서 다루도록 일종의 “국세청 발송 메일함”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 9. 세액공제와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는 교부 건당 100 원(연간 한도 100 만원)을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 10.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장점

#### (1) 업무시간 단축

온라인을 이용한 세금계산서의 전달로 업무시간이 단축 된다.

#### (2) 오류발생 감소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 위험성이 감소되고 수시로 집계 및 조회가 가능하여 접수사실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므로 오류 발생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 (3) 장비 및 공간 불필요

종이세금계산서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간과 인력을 절감할 수 있다.

#### (4) 업무 편의성 증대

대량의 세금계산서도 동시 처리 및 관리가 가능하며, 인쇄 및 발송의 과정이 생략되어 업무시간이 감소 된다.

#### (5) 경상비용 절감

종이세금계산서 대비 우편 발송 비용이나 인쇄 비용 등 경상비용이 절감 된다.

#### (6) 허위세금계산서 근절

국세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적발할 수 있으며 매입내역 조적을 통한 탈세행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7) 철저한 보안 가능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100% 안정성과 암호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철저한 보안이 보장된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문제점**

- (1) 전산장애 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 된다.
- (2) 소규모 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오류 발생의 가능성 상존 한다.
- (3) 국세청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상당한 재정적 지출이 예상 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대처방안**

2010 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법인사업자 의무화를 계기로 설립추진중인 전산법인은 회원들의 기대에 절대적으로 부응해야 할 의무와 세무사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결하여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부여 받고 있다. 지금 출범하는 전산법인이 성공하기 위하여는, 기장 및 신고대리가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확한 시장분석 및 경쟁 시 분석을 통해 사업 리스크 관리를 포함한 현실적인 사업대안 제시, 다수 회원의 의견수렴 등을 검토하여 2-3 년 후에도 기장료가 감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1) 전산법인 설립**

한국 세무사회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제도와 관련하여, 독일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위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의 공익적인 측면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세무사회가 주축이 되어 전산법인(ASP 사업자) 설립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7 월 29 일 현재 전체 개업회원 8,170 명 중 4,545 명이 참가(참가율/55.63%)하여 32 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전산법인 설립 추진단(신설법인 명/ ㈜한길 TIS, 홈페이지 www.bestbill.co.kr)이 지금 설립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 (2) 전산법인 사업추진 현황

①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세금계산서는 대략 6 억 매(최대 10 억 매)정도이며, 세금계산서 1 매당 발행수수료로 200 원을 책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연간 2,000 억원 대의 신 IT(정보기술)시장이 열리게 된다.

현재 50 여개 회사를 회원사로 출발한 전자세금계산서 협의회에서는 1977 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이후 30 여년 간 사용되던 종이세금계산서가 전자화된다는 것은 국내 세무관행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② 한국세무사회에서 설립 중인 전산법인도 이들 업체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무사업계의 대 변혁을 예고 하고 있다.

③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5 월 4 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독일 세무회계 프로그램 전산법인인 다테브(Datev)의 대표 캄프 (Kampf)와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추진 중인 전산법인 설립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다테브는 1966 년에 설립되어 현재 4 만여명의 세무사가 다테브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간 약 6 억 유로(원화로 약 1 조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의 사용료는 1 인당 300 유로 (원화 약 51 만원)정도이며 매년 65 유로 정도의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다.

##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법령

### 1.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거래 기본법은 1999 년 1 월 제정하여 동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정의
- 2)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
- 3) 전자문서의 법률관계 정립
- 4) 공인인증기관 운용

### 2.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은 1999 년 7 월 1 일 시행하고 2001 년 1 월과 12 월에 개정 되었습니다.

- 1) 전자서명의 개념
- 2) 전자서명의 효력
- 3) 공인인증기관의 지정

- 4) 인증서의 내용
- 5) 인증관리체계의 인정 규정

### 3. 세법상 규정

#### (1) 국세기본법

##### 1) 전자신고의 정의

전자신고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 등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처리장치(전화통신장치를 포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2 조 18 호)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 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동법 43 조 1 항)

##### 2) 장부의 비치 및 보존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때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다음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 85 조의 3 3 항, 동법 시행령 제 65 조의 7)

#### (2) 부가가치세법

##### 1) 세금계산서(법 제 16 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9 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12.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 (1-4 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이다)

5.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007.12.31 개정)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8.12.26 신설)

제 2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8.12.26 개정)

제 2 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2008.12.26. 개정)

2) 가산세(법 제 22 조)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개정)

② 제 16 조 제 2 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008.12.26 신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 2 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 분의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12.30 신설)

1. 제 16 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008.12.26 개정)

3)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제 32 조의 5)

사업자가 제 16 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 년 12 월 31 일까지 교부(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교부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12.26 신설)

제 1 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 18 조 및 제 19 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12.26. 신설)

③ 법 제 32 조의 5 제 1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 원을 말한다(2009.2.4 신설)

④ 법 제 32 조의 5 제 1 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 만원으로 한다.

(2009.2.4 신설)

## (韓國/副題) 稅務士 名稱獨占使用 그 後

### 1. 서론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는 세무사자동자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세무사회는 일본식의 세무대리 일원화로 가느냐, 독일식의 자동자격을 배제하고 다원화로 가면서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는 실리로 가느냐에 대하여 고민을 하였다.

이전에는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하는 세무대리 일원화로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하였지만, 사실상 세무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관리가 어려워 형식적인 세무대리 일원화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지만, 자동자격폐지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세무사의 명칭만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격이 있으면서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법상의 모순이 있지만, 이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 자체를 배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소비자인 납세자의 인식과 선택권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세무사자동자격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후 변호사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세무사법 위헌여부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과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

한편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을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은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사회공감대와 입법과정상 정당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세무사회는 지속적으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자동자격폐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II.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진행과정

### 1. 한국세무사제도 변천과정

#### (1) 세무사제도의 탄생

우리 세무사법은 1961.9.9. 국가재건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여 탄생하였다. 재무부에서 일본의 세리사제도를 모방하여 세무사법을 초안하였으나 당시 계리사법에 계리사업무로 규정된 세무대리 업무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계속 계리사의 직무로 남겨놓고 변호사와 계리사(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주도록 하였다.

#### (2) 세무대리 일원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추진

1962년 세무사회를 창립할 때 세무사 수가 131명이었고 그것도 대부분 공인회계사들이 자동 자격을 이용하여 등록한 것이었다. 1977년대부터 세무사등록자 수가 1,000명이 넘게 되었고 세무사회에서는 세무대리 일원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1980년에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세무대리일원화를 찬성하는 검토의견을 재경부에 보냈으나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반대로 법개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에 세무대리는 세무사의 명칭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법을 세무대리의 준거법으로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인 세무사는 세무대리수입이 전체수입의 90% 이상이 되어야 세무사회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공인회계사의 세무사회 가입을 면제하여 세무사회에서 공인회계사인 세무사의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종 세법에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명칭으로만 표시되어 세무사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3) 자동자격 폐지 및 세무사명칭 독점사용 세무사법 개정추진

2003년 세무사법개정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을 배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약 15년간 이론을 개발하여 정부에도 홍보하고 공인회계사회 및 변호사회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의원입법을 통해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 배제를 추진하여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법사위원회에서 변호사 출신 의원의 반대로 자동자격 폐지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각자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2. 각국의 사례

### (1) 미국

미국의 세무사제도는 약 120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무사(EA), 공인회계사(CPA), 변호사(Lawyer)는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며 무제한적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다. 이중에서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서 자격이 주어지는데 반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각 주정부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 (2) 독일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다만 그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도록 세무대리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시험을 보아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 (3) 오스트리아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4) 중국

최근에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경우에도 세무사만이 세무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5) 일본

세무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유일하게 자격을 자동으로 주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세리사명칭을 사용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 세리사연합회에 등록, 임회하는 조건으로 명칭사용과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5년 4월 1일부터는 소위 허가공인회계사라도 반드시 세리사회에 등록하고 세리사의 명칭으로 세리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세리사 관리의 일원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3. 세무사법 개정내용

(1) 법 개정에 따른 세무사법 적용 요약 (법률 제7032호 2003.12.31.)

#### 1) 요약

세무사의 자격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2004년부터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6조에 의해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며, 여기에 등록된 자만이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자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2) 법 개정 전 세무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 ①세무대리업무 개시

재정경제부의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하나 변호사는 임의등록이 가능하다.

##### ②세무사명칭 사용

위 1)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 사용이 가능하다.

##### ③세무사법 적용

위 1)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회 가입과 제명, 교육, 징계(세무사회 회칙위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외 세무사법 규정은 적용, 다만, 전업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전업이라 함은 전체수입금액 중 세무대리업무 수입금액 비율이 90%이상 되는 것을 말한다.

#### 3)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 ①세무대리업무 개시

공인회계사는 재정경제부의 세무대리등록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변호사는 등록할 수 없다.

##### ②세무사명칭 사용

법 개정 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③세무사법 적용

위 1)에 의해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자는 세무사법 규정 중에서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의 결격사유, 기명날인, 조사통지, 비밀엄수, 성실의무, 탈세상담금지, 명의대여금지, 사무소직원, 사무소의 설치, 장부작성,

係爭권리의 양수금지,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금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징계(세무사회 회칙위반 규정은 제외), 벌칙과 관련한 규정만 적용된다.

4) 경과조치(개정부칙)

- ①법 개정 전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진 자(개정 전까지 미등록의 경우)는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의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무사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 ②법 개정 전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로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자는 세무사회 가입과 제명, 교육, 징계(세무사회 회칙위반)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전업인 경우에는 세무사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된다.

**법 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의 세무사법 적용요약표**

(법률 제7032호) 2003년12월31일 법 개정	법 개정 전 세무사자격 취득자		법 개정 후 세무사자격 취득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구 분				
1)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				
①재정경제부 세무사등록부 등록	필수	임의	불가	불가
②재정경제부 세무대리등록부 등록	무관	무관	필수	불가
③세무사명칭사용 여부	가능	가능	불가	불가
2)세무사법 적용여부(등록에 한함)				
①한국세무사회 가입 및 제명 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②교육 관련 의무규정	없음 1)	없음 1)	없음	없음
③징계 관련 규정	적용 2)	적용 2)	적용 2)	없음
④업무(비밀엄수, 신의성실 등)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⑤벌칙 규정	적용	적용	적용	없음
⑥기타 규정	적용	적용	없음	없음

\*1) 전업인 경우에는 적용

\*2) 세무사회 회칙 위반 관련한 징계규정은 적용 아니함

#### 4. 세무사 명칭 독점 사용을 위한 세무사회의 노력

##### (1) 대국민 서명 운동 전개, 105 만명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서명

세무사회 5,900 여 회원은 4 개월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여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하여 105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

##### (2) 전국민 대상 갤럽 여론조사

2003. 9. 23. 한국갤럽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5.3%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답하였으며, 국민의 90.7%가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 (3) 세무사법 개정 공청회 개최

2003. 10. 2. 재정경제부 주관,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세무사법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 모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업무는 계속하더라도 납세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이 사용하여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참석한 납세자도 토론자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결국 공청회에서는 토론자와 납세자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 Ⅲ. 세무사 명칭의 독점사용 그 이후

#### 1. 세무사 명칭 독점사용으로 인한 효과

##### (1) 경쟁을 촉진시켜 세무서비스 질의 향상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하고 있어서 세무대리 시장에 있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국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게 되었다.

##### (2) 명칭혼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와 정확한 정보에 의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

갤럽조사에 의하면 국민들 대다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부여를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변호사, 공인회계사들이 세무사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법에서 정한 검증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으며 또한 명칭혼용에 의한 왜곡된 선택에 의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자’와 ‘그 외의 세무사자격소지자’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받는 계기가 되었다

##### (3) 전문자격사제도의 확립

모든 자격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목적과 사명 그리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과목도 다르므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목적과 사명이 세무사와 다른데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세무사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함으로써 국가전문자격사제도의 확립과 세무사는 세무에 대한 전문가라는 인식을 더욱 제고시킬 수 있었다.

##### (4) 자동자격폐지와 유사한 효과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대리업무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세무서비스의 소비자 관점에서 세무사라는 명칭은 조세전문가라는 인식과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며, 세무사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의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자격자로서의 공문 발송, 간판, 명함 등의 영리광고 목적으로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 대외적으로 전문자격사로서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 하는데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자동자격을 취득하는 실익 및 의미까지도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세무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무임승차가 간접적으로 차단되어 자동자격폐지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세무대리인 현황

(1) 국세청 세무대리인 등록 현황

(국세청통계자료 : 매년 말 기준)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2년	9,943	5,141	4,572	229
2003년	10,831	5,717	4,768	346
2004년	12,378	6,210	5,740	428
2005년	13,584	6,622	6,447	515
2006년	14,382	7,014	6,819	549
2007년	15,231	7,424	7,221	586
2008년	16,448	7,798	8,030	620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기존 세무사등록부, 2004년부터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2)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등록 현황

(한국세무사회 : 매년 3월말기준)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3년	10,544	5,254	151	25
2004년	12,174	5,829	151	26
2005년	13,442	6,297	157	26
2006년	14,245	6,694	159	24
2007년	15,083	7,096	155	25
2008년	16,296	7,463	159	24

(3) 자격사별 수

구분	합계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2004년	20,965	6,191	7,886	6,888
2005년	23,636	6,676	9,267	7,693
2006년	25,650	7,088	10,137	8,425
2007년	27,815	7,521	11,068	9,226
2008년	30,495	8,133	12,191	10,174

### 3. 세무사법 개정 이후 진행사항

#### (1)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세무사법 합헌결정

##### 1)요약

변호사는 세무사자격을 부여 받으면서도 ‘세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하여 2008년 5월 29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본래의 명칭을 사용하라”고 하는 입법취지는 세무사의 고유한 전문직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먼저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상 세무사 직무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그 직무수행의 전문성과 그에 따른 자격요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무사의 명칭은 그 직무상의 공공성과 전문성의 표지가 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 2)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 ①다수의 기각의견

다수의견은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단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는 세무사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변호사가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의 종류로서 ‘세무’, ‘세무대리’, ‘조세’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제한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②소수의 반대의견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격명칭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수행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격을 소지하는 의미 자체도 상실시키



는 결과가 되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애초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법 제 22조의 2), 자격소지자의 객관적 진실에 기초한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까지 삼은 것이어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3)분석 및 검토

#### ①소비자 권리의 침해 여부

개정법률의 입법취지는 한편으로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의 고유 직역을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관청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납세자는 “자격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세무분야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다른 자격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를 구분함으로써 세무대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국가가 부여한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세무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②평등권 침해의 여부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 및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가 모두 동일한 능력과 전문성 또는 자질을 가졌다고 할 수 없고, 그 선발시험의 과목, 평가방법 및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그 차이에 따라 일정 부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 실질적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신이 의도하여 취득한 자격’의 명칭이 아닌 ‘의도하지 않았으나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 자격’의 명칭 사용을 제한 받는데 불과하고,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세무사와 동격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자격명칭의 사용을 금지할 뿐,

변호사가 세무, 세무대리, 조세 등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불허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제한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③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국가자격시험제도를 통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검증된 자임을 표지하는 전문자격사의 자격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그 자격사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자격사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자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며, 결국 전문자격자가 자격사 명칭에 대한 사용여부 또는 그 행위의 영리 광고 등의 표시행위 등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세무사’의 자격명칭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한 조세법과 세무회계의 행정실무적 능력(비 법률 과목인 회계학, 재정학, 세무회계 등의 전문성이 많은 비중 차지)뿐 아니라 법률제도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나 세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전문성의 표지는 오로지 세무사자격시험으로만 검증되는 전문성을 표지하는 것이다. 변호사로서 자동으로 취득한 세무사자격 취득자와 세무사자격시험으로 얻어진 세무사자격 취득자는 그 취득경위뿐만 아니라 전문성에서도 실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세무사는 세무사자격시험을 통해 얻어진 세무사자격을 근간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들에 의한 “세무사”의 명칭사용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되지만, 변호사에 있어서의 “세무사” 명칭은 사법시험을 통해 당초에 주어지지 않은 세무사의 전문성을 빌려 영업을 하고자 하는 수단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④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 조항은 명칭 여부만을 제한할 뿐 그 외에 변호사 직무 내의 세무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변호사의 자격으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응시자들에 비하여 오히려 유리한 지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을 그 내용

을 하는 것이지, 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체 자격사, 즉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고, 다만 세무사라는 고유 직역을 일면 확보하면서 동시에 소비자가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면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리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관련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⑤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

현행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변호사가 본래적으로 세무사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 아니고, 세무사의 업무가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와 일정 부분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에 게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변호사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제도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변호사가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 자동자격 폐지에 대한 재발의(이상민의원 대표발의:2008.8.7)

#### 1)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세무사법 제 3 조 4 호 삭제)

#### 2)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기획재정위원회 2009.2)

①세무사자동자격부여는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

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격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음

②변호사 등 특정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년 700 여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③전자세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와 세무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바, 사법시험의 경우 세무업무에 관한 과목이 거의 없으며 1차 시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조세법도 거의 선택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세무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④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⑤현행 세무사법 제 3 조에는 세무사 시험합격자·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 20 조 제 2 항에서는 동법 제 6 조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 입법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⑥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분야 시장이 일정 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유직역을 둘러싼 각 자격사간, 나아가 해외 자격사와의 직역다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⑦다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호사법제 3 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이 실익이 없다는 점,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

#### IV. 향후 과제

한국세무사제도는 세무사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자동자격을 부여하였지만, 세무사의 충분한 공급, 복잡해진 납세환경의 변화와 전자세정의 확대로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한편, 변호사법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각 자격사의 명칭에서 표지되어지는 전문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동자격폐지는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국회 입법과정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자동자격폐지와 관련한 입법취지 즉,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세무사의 명칭을 전문적인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로 단일화하고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는 각 자격사의 고유한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자는 입법의도를 훼손하면서도 법사위원회는 삭제되었던 자동자격을 되살리도록 수정하여 법체계상 양립할 수 없는 상충 조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세무사자격이 부여 되면서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입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므로 이를 개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이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세무사자동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3년 개정 전의 세무사자격이 있는 공인회계사 관리감독의 현실성 등 형식적인 세무대리 단일화의 문제점과 개정 후의 세무사명칭사용금지와 관련 세무사미등록자가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위반의 감시감독 및 그에 대한 사후관리 등 엄격한 법 집행의 실효성의 문제점으로 양자 모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문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공인회계사회와의 꾸준한 대화와 논리의 연구로 자동자격과 관련한 제도개선의 과제가 남아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세무사는 조세전문가로서의 고유직역으로 인정하고 있고, 자동자격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입법과정에서도 우리의 정당한 논리가 반영되고 있으며, 자동자격폐지는 세계적 추세로서 국민의 합리

적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과도기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각종 자격사의 대량배출과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법률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인한 세무·회계시장의 과다경쟁 속에서 조세전문가로서의 위상제고와 권익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노태주. 세무사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 세정연구원 2008

세무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3

정은선. 세무사 제도의 발전동력을 살려야 한다, 세무사제도발전연구소 2006

김웅희. 세무사법상의 '세무사' 명칭에 관한 헌법적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2009

김광욱.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기획재정위원회 2009

#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 검 토 보 고

2009. 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광 목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상민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08년 8월 7일
3. 회 부 일: 2008년 8월 29일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제 3 조제 4 호 삭제).



### III. 검토의견

구 분	현 행 (세무사법 제 3 조)	개 정 안
세무사 자격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li> <li>◦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li> <li>◦<u>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u></li> </ul>	<u>〈삭 제〉</u>

□ 개정안은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sup>1)</sup>

첫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자격사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격 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음.

즉,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제도는 세무사의 경우 세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변호사 등이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이들을 세무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신뢰하게 함으로써 세무대리를 이용하려는 국민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봄.

참고로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에 변호사에 대한 자동자격부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둘째, 변호사등 특정 자격소지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제도 시행 초기에 자격시험 합격자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는 매년 700 여명 내외의 세무사 합격자를 배출하여 전문 세무사를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므로 변호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필요성이 크지 않음.

셋째, 전자세정이 확대되고 기업의 회계와 세무가 더욱 복잡해지는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sup>2)</sup> 사법시험의 경우 세무업무에 관한 과목이 거의 없으며 1 차시험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조세법도 거의 선택되고 있지 않아 대부분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세무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sup>3)</sup>

〈변호사 및 세무사의 시험과목 비교〉

구분	세 무 사	변 호 사
제 1 차 시험 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정학</li> <li>◦회계학개론</li> <li>◦세법학개론</li> <li>◦상법(회사편)</li> <li>◦택1(상법. 민법. 행정소송법)</li> <li>◦영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li> <li>◦민법</li> <li>◦형법</li> <li>◦택1(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 경제법, 형사정책, 법철학)</li> <li>◦ 영어</li> </ul>
제 2 차 시험 과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법학1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li> <li>◦세법학2부(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li> <li>◦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li> <li>◦회계학2부(세무회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헌법</li> <li>◦민법</li> <li>◦형법</li> <li>◦상법</li> <li>◦행정부</li> <li>◦민사소송법</li> <li>◦형사소송법</li> </ul>

넷째, 개정안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것은 아님.

다섯째, 현행 세무사법 제 3 조에는 세무사 시험합격자·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법 제 20 조제 2 항에서는 동법 제 6 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게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들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으로 보임.<sup>4)</sup>

따라서 세무사법 제 3 조의 변호사·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여 입법적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법률서비스분야 시장이 일정 부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유직역을 둘러싼 각 자격사간, 나아가 해외 자격사와의 직역다툼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사전에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지라도 변호사법 제 3 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안의 실익이 없다는 점,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의 차원에서는 변호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최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음<sup>5)</sup>.